

# 서울교육대학교와 (사)꿈을 키우는 사람들(드림파머스)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서

서울교육대학교(이하 “서울교대”라 한다)와 사단법인 꿈을 키우는 사람들(“드림파머스” 이하 “DF”라 한다)는 아동과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정서는 서울교대와 DF간에 교육 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양 기관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합의정신)** 서울교대와 DF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간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한다.

**제3조(협력사항)** 서울교대와 DF는 상호 합의정신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상호 협력한다.

1.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도 및 입시정보센터 운영
2.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센터(커뮤니티교육센터) 운영
3.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확충 협력 및 공간 지원
4. 교육 프로그램 공동연구와 운영 및 정보교류
5. 기타 상호협력 가능한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

**제4조(비용부담)** 서울교대와 DF는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상호 합의에 의해 부담하거나 지급한다.

**제5조(협정의 변경 및 해지)** ①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  
② 본 협정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정의 해지를 할 수 있다.

1. 본 협정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
2. 공동 협력사업 평가결과나 협력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
3. 협정 상대방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제6조(협정의 효력)** 본 협정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을 발생하며, 별도의 해지 결정이 없는 한 매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.

**제7조(기타)** 본 협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나 협력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 기관의 별도 협의 하에 따로 작성한다.

2010년 12월 2일

서울교육대학교

총장 송 광 용



(사)꿈을 키우는 사람들  
드림파머스(Dream Farmers)

이사장 고 승 덕

